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

제정 2013. 2. 7 훈령 제324호 일부개정 2013. 10. 23 훈령 제332호 일부개정 2016. 5. 25 훈령 제371호 일부개정 2018. 7. 24 훈령 제398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광명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자녀의 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제14조에 따라 광명시청 내에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18, 7, 24〉
- **제2조(용어의 뜻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18. 7. 24〉
 - 1. "영유아"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 - 2. "직원"이란 광명시 소속 공무원, 청원경찰, 공무직근로자,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.
 - 3. "보육"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.
- 제3조(명칭 및 위치) ① 직장보육시설의 명칭은 광명시청직장어린이집(이하 "어린이집"이라 한다)이라 한다.
 - ② 어린이집은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내에 둔다.
- 제4조(운영) ① 어린이집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,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, 단체,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시장은 위탁받은 자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8. 7. 24〉
 - ③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위탁업체 선정은 「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〈개정 2013. 10. 23〉
 - ④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은 07:30부터 19:3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소속 직원의 비상근무 등 근무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시 보육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⑤ 어린이집은 공휴일(토요 휴무일 포함)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한다.
- 제5조(입소 대상 및 자격) ① 어린이집의 입소 대상은 시 소속 직원의 자녀로

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

- 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한다.
- ② 입소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며,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. 〈개정 2013. 10. 23〉
- 1. 한부모인 직원 자녀와 장애인 직원 자녀
- 2. 맞벌이 직원의 자녀
- 3. 맞벌이가 아닌 직원의 자녀
- ③ 어린이집에 증원 또는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로 원아를 모집할 경우에는 대기순번에 의하여 입소 대상자를 결정한다.
- ④ 입소희망자의 취업증명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준용한다. 〈신설 2013. 10. 23〉
- 제6조(입소절차) 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육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원장은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 승인 결정통지서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7조(퇴소) 입소 영유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퇴소 시킬 수 있다. 〈개정 2013. 10. 23〉
 - 1. 해당 직원이 전출 또는 퇴직한 때
 - 2. 해당 직원이 퇴소를 원할 때
 - 3. 입소 영유아가 장기간의 치료 및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
 - 4. 입소아동이 어린이집 허가없이 1개월 이상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
- 제8조(비용부담)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6조 및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제2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〈개정 2018. 7. 24〉
 - ②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9조(보육료) 입소 영유아의 학부모는 어린이집 운영비의 일정액을 매월 보육 료로 부담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부의 보육사 업 지침을 준용한다.

(추 1)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3. 10. 23 훈령 제332호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6. 5. 25 훈령 제371호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8. 7. 24 훈령 제398호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〈개정 2016. 5. 25〉

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입학원서

2 02)2680-6397~8

원아명	한글	│ ─ 성별	혈액형				
	한문						
생년월일		전화번호			사 진		
주 소							
	성 명	근무처 (부서)			전화번호 (직장/휴대폰)		
보호자	부						
	모						
	가	족	사 항				
관 계	성명	생	년월일		비고		
입학 전 경력			좋아하는 음식				
어린이의 성격			싫어하는 음식				
즐겨하는			습 관				
놀이			(건강상태)				
위 어린이를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에 입소시키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
			20	년	월 일		
			보호자		(인)		
광명시장 (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원장)귀하							

[별지 제2호 서식] 〈개정 2016. 5. 25〉

입 소 승 인 결 정 통 지 서

접수번호		2 0 - 호				
입소승인일		2 0 일부터		까지		
아동	성 명	(한자 :)	성별구분			
	생년월일	(현재: 년 개월)	입소반명			
	혈액형		기 타			
보	부		근 무 처			
ই	모		근 무 처			
자	주 소	(우편번호 :)				
결정사항						
상기 아동을「광명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」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 직장어린이집 입소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.						

20 년 월 일

광 명 시 장

광명시 직장어린이집의 장